



ISBN 978-89-6921-364-8 98060

## 2020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

---

인 쇄 일 2020년 12월  
발 행 일 2020년 12월  
발 행 처 한국장애인개발원  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5층  
Tel. 02-3433-0600 Fax 02-412-0463  
홈 페이지 vr.koddi.or.kr  
디 자 인 리드릭  
편집·인쇄 리드릭 Tel. 02-2269-1919



2021  
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



보건복지부



한국장애인개발원



## 2021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목차

장애인일자리사업 .....	4
공통사항 .....	6
기타 안내사항 .....	9
일반형 일자리 .....	10
복지일자리 .....	12
특화형 일자리 .....	14

# 장애인일자리사업

## 1. 사업 목적

-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
-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확대
-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

## 2. 사업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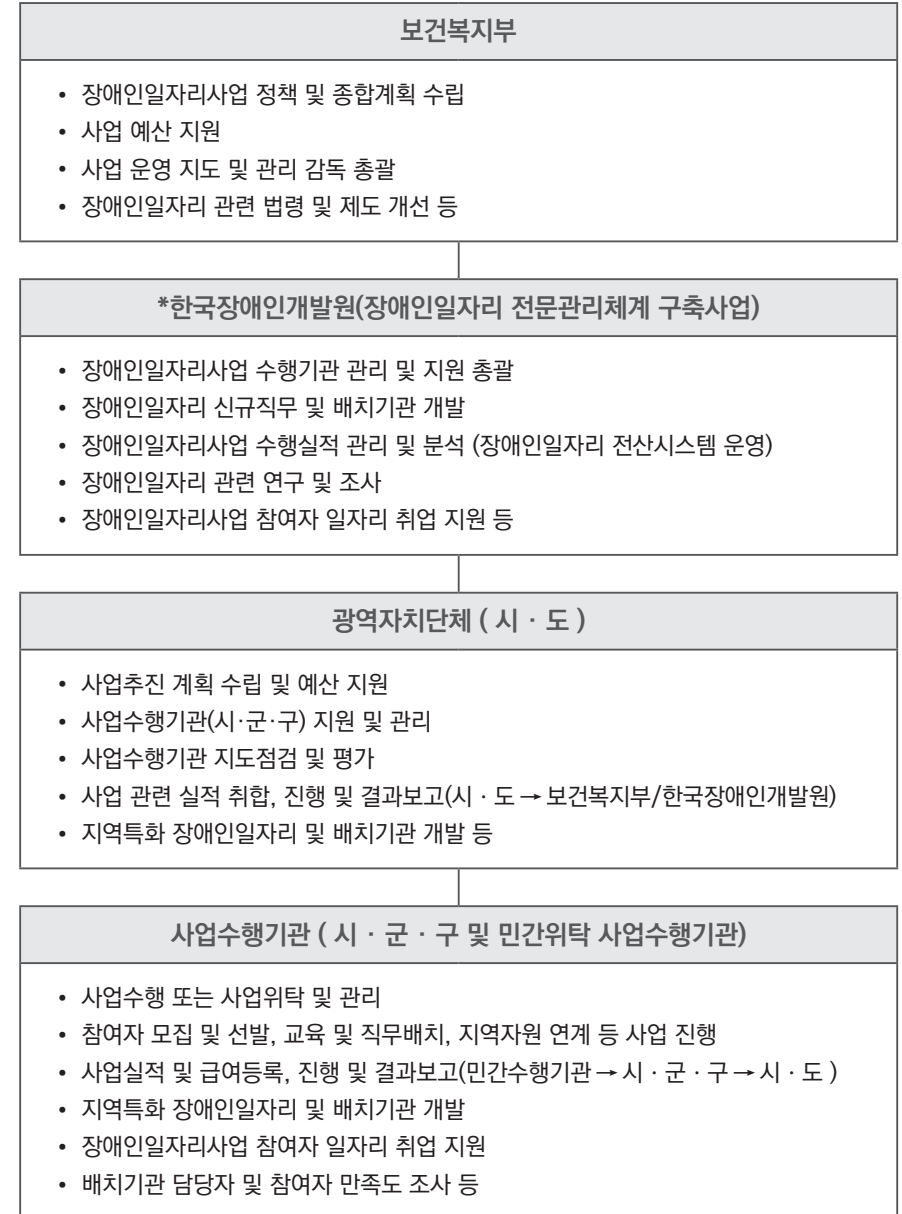
-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일반형일자리, 복지일자리, 특화형일자리로 구분

일반형일자리	· 행정도우미 ·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· 복지서비스지원요원 · 직업재활 시설지원 요원	미취업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,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
복지일자리	· 참여형 · 특수교육-복지연계형	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·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
특화형일자리	·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·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	미취업 장애인에게 특화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

- 사업기간: 12개월(1월~12월)

구분		근로시간		급여(월)	지원인원
일반형 일자리	전일제(주 5일)	1~11월	주 5일(40시간)	1,822,480원	6,690명
		12월	주 37.5시간	1,704,760원	
	시간제	1~11월	주 20시간	911,240원	2,775명
		12월	주 19시간	863,280원	
복지 일자리	참여형 특수교육-복지 연계형	주 14시간 이내 (월 56시간)		488,320원	13,644명
특화형 일자리	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(주5일)	1~11월	주 5일(25시간)	1,156,010원	910명
		12월	주 5일(23.5시간)	1,081,380원	
	발달장애인 요양 보호사 보조일자리(주5일)	1~11월	주 5일(25시간)	1,142,320원	877명
		12월	주 5일(23.5시간)	1,068,510원	
총 합계					24,896명

## 3.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



## 1. 장애인일자리 참여 신청 제외 대상

-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피부양자는 제외)  
단,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-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
-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
※ 단,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『근로계약서』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-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
단,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
-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
-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
-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  
※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에 법인 또는 기관단체 대표, 임직원
- ⑧ (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만 해당) 안마원,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
단,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[의제 01254-15864호(1987.6.26.)]

## 2. 반복참여 제한

- 반복참여는 최대 연속하여 2년까지만 허용,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 제한 (당해연도 참여일수가 총 180일 초과하는 경우는 1년 참여자로 간주)

### 2년을 초과하여 참여 가능한 경우

-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만 65세 이상자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

## 3.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

- 참여자가 직업상담, 취업알선, 직업훈련 등을 실시한 후 관련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일정 범위에서 시간 근로시간으로 인정
- **직업훈련 인정 교육과정**
  - ① 국가자격증 과정 및 국가공인민간자격증 과정
    - Q-Net(<http://www.q-net.or.kr>) 자격정보에서 확인 가능
    - 확인방법: 교육(직업훈련)확인서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확인 후 담당자에게 제출
  - ② 온라인 교육 과정
    - 수료증 발급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 인정 가능(수료증 증빙 필수)  
※ 온라인 교육은 교육 시작 전 반드시 '온라인교육 신청서'를 제출하여야 하며, 교육 수료 후 1주일 이내로 '온라인교육 결과보고서'를 추가 증빙하여야 함.
    - 확인방법: 온라인 교육 신청서, 온라인교육 결과보고서, 교육수료증\*을 담당자에게 제출  
\* 수료증 내 교육시간 명시 필수

### • 인정범위

사업 유형	근로시간으로 인정 시간
일반형(전일제)	연 60시간 이내(월 최대 20시간 이내)
일반형(시간제)	연 30시간 이내(월 최대 10시간 이내)
복지형(참여형, 특수교육-복지연계형)	연 21시간 이내(월 최대 10시간 이내)
특화형 (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,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)	연 38시간 이내(월 최대 12시간 이내)

## 4. 참여 중단 조치

### 1) 즉시 참여 중단

참여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를 초래하였을 경우 즉시 참여 중단 조치 가능

#### [즉시 참여 중단 사항]

- 장애정도 재판정 심사결과 장애정도 미해당 판정을 받고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
-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
-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경우 (단,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중단한 경우 제외)  
※ 일반형일자리(전일제)의 경우이며, 그 외 사업유형은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로 근무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가능
- 반복참여 가능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연속으로 참여한 경우
- 참여자 정보(장애인등록여부,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등)가 사실과 다를 경우



## 2) 징계위원회를 통한 참여 중단

참여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를 초래하였을 경우 징계위원회를 통해 참여 중단 조치 가능

- 연속 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
- 참여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를 초래하여 참여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
- 참여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
-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 
(ex. 타인이 근무한 경우, 실제 출근하지 않았는데 출근으로 처리한 경우)

## 3) 절차를 통한 참여 중단

참여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를 초래하였을 경우 참여중단 절차에 따라 참여 중단 조치 가능

-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 견임, 업무지시 불이행, 민원야기, 근무지 이탈, 음주행위, 업무태만 등 기타의 사유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
### [참여 중단 절차]

절차	내용	비고
시정조치	사업수행기관 담당자는 참여자와 면담	면담 후 상담일지[서식25]를 작성하여 보관
경고조치	시정조치 후에도 반복될 경우 업무 경고장[서식26]을 통한 경고 조치	업무경고장은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참여자에게 주고 1부는 기관에서 보관
징계위원회	경고조치가 2회 이상 반복된 경우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 실시	해당 시군구, 사업수행기관, 배치기관 담당자 등 참석 ※ 참여자에게는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함
참여중단 조치	<u>징계위원회 결과 참여 중단 결정된 경우</u> , 참여 중단 예고 통지서를 통한 참여 중단 조치	참여중단예고통지서는 참여 중단일 30일전에 참여자에게 전달해야함

※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가 중단된 경우, 중단시점으로부터 이후 1년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를 제한함.

## 1. 여성 참여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

- 임신하여 출산을 앞 둔 여성 참여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(근로기준법 제74조 임신부의 보호).
  - 임신 중의 여성 참여자는 출산 전과 후 90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.
  - 단, 12월 31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출산휴가 또한 종료됩니다.
-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합니다.
  - 단, 6개월 이상 근로자만 해당되며, 육아휴직 중이라도 기존계약서대로 12.31.이전 자동 계약이 종료됩니다.

## 2. 참여자 선발 가점대상

- 특수학교(급)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
  - 선발 가점: 5점
- 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을 수여한 '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참여자'에 대한 가점 제공
  - 선발 가점: 5점
  - 수상연도 이후 3년 이내 사용 가능
  - 증빙서류: 상장(보건복지부장관상,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)
-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
  - 선발 가점: 수행기관별 점수 상이
  - 자격증이 필요 없는 직무배치의 경우 가점 제외 가능
- 취업지원대상자
  - 선발 가점: 10점 또는 5점

# 일반형 일자리

## 1. 유형별 근무 내용 및 근무 장소

직무명	직무내용	주요 배치기관
행정도우미	공공 및 복지행정 업무지원	시·군·구청, 읍·면·동 주민센터, 공공기관 등
전담지원 행정도우미	장애인일자리사업 업무 전담지원	시·군·구청
복지서비스 지원요원	사회(장애인)복지 전반의 행정전담 지원 및 직접서비스 (프로그램) 지원	민간 위탁 수행기관,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사업 수행기관, 비영리 복지시설(기관) 등
직업재활 시설지원 요원 (일반형 시간제에 한함)	생산활동 직무* * 하청 임가공 등의 작업활동이나 직접 생산활동	장애인직업재활시설 (장애인보호작업장, 장애인근로사업장)

## 2. 교육

※ 교육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

구분	기본교육(필수)
시행 주체	시·군·구청 또는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
교육 방법	기관별 집합교육 또는 배치기관별 집합교육
교육 시간	8시간 이내
교육 시기	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
교육 내용	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, 안전보건교육, 성희롱 예방교육, 직무 및 직업 소양교육, 장애인식개선 교육 등

## 3. 근무형태 및 복무규정

- 근무시간: 전일제 일자리 1월~11월 주 40시간 / 12월 주 37.5시간  
시간제 일자리 1월~11월 주 20시간 / 12월 주 19시간

◆ 휴가를 사용할 경우  
담당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근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- 휴가: 1월 1일 ~ 12월 31일 참여자 → 연 26일(1년간 출근율 80% 이상일 경우)  
중도참여자 →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

## ○ 특별휴가

구 분		휴가일수	증명서류
결혼	본인	5일	청첩장
	자녀	1일	
사 망	배우자	5일	- 부고장 또는 사망진단서 - 가족관계증명서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일	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/외조부모	3일	
	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	3일	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, 자매	1일	
입 양	본 인	20일	입양확인서
출 산	배우자 출산	10일	출생증명서

※ 특별휴가 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휴가기간을 계산한다.

## ○ 공가

-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·법원·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되는 경우
  -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(사전투표는 제외)
  - 천재·지변·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
  -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 대상자로 통보 받아 수검을 받을 경우(재검진 포함)
  - 장애인일자리사업 교육, 시상식 등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
  - 민간일자리 취업을 위해 취업알선 및 취업지원 교육에 참가하는 경우
  - 배치기관의 사유(창립기념일, 개관기념일, 개교기념일)로 휴업을 하는 경우
  - 본인의 학교(고등학교, 대학교, 대학원)의 입학식 또는 졸업식에 참석하는 경우
  -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에 선수로 참가하는 경우
- 국내대회: 전국장애인체육대회,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,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 
국제대회: 아시아경기대회, 올림픽대회, 스페셜올림픽대회, 농아인올림픽대회, 유니버시아드대회, 청소년올림픽대회, 아시아장애청소년경기대회

※ 단, 대회주최기관의 공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기 일정이 인정되며 국제대회에 한하여 이동시간을 포함

## 4. 보수·보험

보수	전일제 일자리		시간제 일자리	
	1~11월	1,822,480원	1~11월	911,240원
	12월	1,704,760원	12월	863,280원
보험가입	4대보험 가입(국민·건강·고용·산재보험)			



# 복지 일자리

## 1. 유형별 근무 내용 및 근무 장소

직무명	직무내용 및 배치기관
사무, 도서관사서, 우편물분류, 환경정리 등 (35개 직무)	직무에 따라 다름

## 2. 교육

※ 교육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

구분	기본교육(필수)
시행 주체	시·군·구청 또는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
교육 방법	기관별 집합교육 또는 배치기관별 집합교육
교육 시간	8시간 이내
교육 시기	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
교육 내용	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, 안전보건교육, 성희롱 예방교육, 직무 및 직업 소양교육, 장애인식개선 교육 등

## 3. 근무형태 및 복무규정

○ 근무시간: 월 56시간

○ 특별휴가

구분	휴가일수	증명서류
결혼	본인	청첩장
	자녀	
사망	배우자	- 부고장 또는 사망진단서 - 가족관계증명서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/외조부모	
	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	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, 자매	
입양	본인	입양확인서
출산	배우자 출산	출생증명서

※ 특별휴가 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휴가기간을 계산한다.

○ 공가

-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·법원·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되는 경우
-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(사전투표는 제외)
- 천재·지변·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
-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 대상자로 통보 받아 수검을 받을 경우(재검진 포함)
- 장애인일자리사업 교육, 시상식 등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
- 민간일자리 취업을 위해 취업알선 및 취업지원 교육에 참가하는 경우
- 배치기관의 사유(창립기념일, 개관기념일, 개교기념일)로 휴업을 하는 경우
- 본인의 학교(고등학교, 대학교, 대학원)의 입학식 또는 졸업식에 참석하는 경우
-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에 선수로 참가하는 경우

국내대회: 전국장애인체육대회,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,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 
국제대회: 아시아경기대회, 올림픽대회, 스페셜올림픽대회, 농아인올림픽대회, 유니버시아드대회, 청소년올림픽대회, 아시아장애청소년경기대회

※ 단, 대회추진기관의 공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기 일정이 인정되며 국제대회에 한하여 이동시간을 포함

## 4. 보수·보험

○ 보수: 488,320원(고용보험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)

○ 보험가입: 고용·산재보험 가입

※ 복지일자리는 주 14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로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이 없음  
(근로기준법 제18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근거)

# 특화형 일자리

## 1. 유형별 근무 내용 및 근무 장소

사업유형	직무내용	주요 배치기관
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	노인복지관, 경로당을 이용하는 고령의 노인들에게 안마서비스 제공	안마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정 시설 여건 등을 갖춘 노인복지관, 노인여가시설(경로당),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복지관
발달장애인이양보호사 보조일자리	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	요양보호사가 배치되어 있는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시설과 의료법상의 노인전문병원 등

## 2. 교육

※ 교육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

### ○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

구분	기본교육(필수)
시행주체	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
교육 방법	기관별 집합교육 또는 배치기관별 집합교육
교육 시간	8시간 이내
교육 시기	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
교육 내용	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, 안전보건교육, 성희롱 예방교육, 직무 및 직업 소양교육 등, 장애인식개선교육

### ○ 발달장애인이양보호사 보조일자리

구분	기본교육(필수)	보수교육(필수)
시행주체	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	
교육 방법	수행기관 또는 지역사회 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연계를 통한 개별 및 집합교육	
교육 시간	1~2주 이내(25시간~50시간) * 단, 2020년도 기본교육을 이수한 참여자의 경우 5~10시간 교육 가능	1~2일 이내 (5시간~10시간)
교육 시기	직무배치 전 2주 이내	직무배치 후 6개월 이내
교육 내용	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, 기초요양교육, 안전보건 교육, 성희롱 예방교육, 장애인식개선교육, 배치 기관 현장 오리엔테이션 등	심화요양교육 그 외 사업수행기관에서 필요한 교육

## 3. 근무형태 및 복무규정

○ 근무시간: 1일 5시간 / 주 5일(주 25시간)

◆ 휴가를 사용할 경우  
담당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근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○ 휴가: 1월 1일 ~ 12월 31일 참여자 → 연 26일(1년간 출근율 80% 이상일 경우)  
중도참여자 →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

### ○ 특별휴가

	구 분	휴가일수	증명서류
결혼	본인	5일	청첩장
	자녀	1일	
사 망	배우자	5일	- 부고장 또는 사망진단서 - 가족관계증명서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일	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/외조부모	3일	
	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	3일	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, 자매	1일	
입 양	본 인	20일	입양확인서
출 산	배우자 출산	10일	출생증명서

※ 특별휴가 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휴가기간을 계산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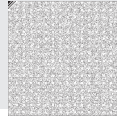
### ○ 공가

-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·법원·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되는 경우
-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(사전투표는 제외)
- 천재·지변·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
-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 대상자로 통보 받아 수검을 받을 경우(재검진 포함)
- 장애인일자리사업 교육, 시상식 등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
- 민간일자리 취업을 위해 취업알선 및 취업지원 교육에 참가하는 경우
- 배치기관의 사유(창립기념일, 개관기념일, 개교기념일)로 휴업을 하는 경우
- 본인의 학교(고등학교, 대학교, 대학원)의 입학식 또는 졸업식에 참석하는 경우
-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에 선수로 참가하는 경우

국내대회: 전국장애인체육대회,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,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

국제대회: 아시아경기대회, 올림픽대회, 스페셜올림픽대회, 농아인올림픽대회, 유니버시아드대회, 청소년올림픽대회, 아시아장애청소년경기대회

※ 단, 대회주최기관의 공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기 일정이 인정되며 국제대회에 한하여 이동시간을 포함



## 4. 보수·보험

구분	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		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	
	보수 (4대보험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)	1~11월	1,156,010원	1~11월
12월		1,081,380원	12월	1,068,510원
보험가입	4대보험 가입(국민·건강·고용·산재보험) 및 배상책임보험			